

위태로운 한국 노인들



곽 대 경 | 한국심리학회장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1993년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심리사 인턴으로 일할 때 한국 노인을 정신과 외래 환자로 만난 적이 있다. 환자는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도 채 안 된 전문직 출신으로 단정한 모습의 노신사였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부인을 사별한 뒤 한국 생활이 어려워져 둘째 아들이 사는 미국땅으로 이민을 왔다고 했다. 얼마 뒤 아들네와 분가하면서 정부 보조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불면증과 우울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아왔다고 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노후에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절이라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더라도 아들 내외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미국땅에서 따로 아파트를 구해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외로움을 토로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런데 2000년대 초부터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연의 노인을 많이 만나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끼리 거주하는 비율은 78.2%나 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책임지고 있었다.

노후 부양책임이 자식보다 정부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불과 30년 만에 전통적인 가족의 노후 부양 또는 동거가 전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부양 의무가 너무 가중했던 한국 사회에서 부담을 덜어주려는 바람직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 중심이던 많은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중 90%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상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 노인은 6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는 사회적 지지 결손은 한국 노인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살률 통계는 물론이고 수년 동안 국내 최상위 자살률 중에서도 80대 이상 고령 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최근 60~70대 연령층의 자살 증가세는 한국 노인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자살 위기를 먼저 극복한 OECD 회원국들과 너무 다르다. 앞서 OECD 회원국들은 국민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왔다.

반면 한국은 이런 고려가 거의 없어 매우 아쉽다. 한국보다 먼저 산업화한 국가들은 자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적 제도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삶의 질(How's Life)’ 조사에서 회원국 국민의 사회적 지지 유무는 핵심 지표다. 각국의 통계와 순위를 연령·성별 및 교육에 따라 발표하고 있다.

핀란드와 미국은 자살 위험 및 예방 요인에 대한 전국 전형 표본 연구 등에서 사회적 지지 여부를 주요 변인으로 포함해 자살 예방 요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사회적 지지 통계에서 한국인 중 유독 노인 인구에서 회원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사실은 노인 인구 자살률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외로움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들에게서 건강에 주는 악영향이 가장 크게 관찰되고 있고, 정신건강의 경우 밀접한 연관성이 보고된다.

아마도 지금의 노인 인구는 부모를 부양하고도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게 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노인의 빈곤 문제에서 확인된 경제적 준비 뜻지않게 노인들은 사회적 지지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한국사회가 더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의 억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 때에 한국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적 관심과 세심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오피니언_최진영 한국심리학회장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기획재정부 외 2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배경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 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2.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2년 현실화율	기존 ‘23년 현실화율	수정 ‘23년 현실화율
아파트	71.5%	72.7%	69.0%
단독주택	58.1%	60.4%	53.6%
토지	71.6%	74.7%	65.5%

□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구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시행 전	'11~'20년 연평균	3.02%	4.39%	4.66%
시행 후	'21년	19.05%	6.80%	10.35%
	'22년	17.20%	7.34%	10.17%

*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공동주택 연간 최대 4.3% 수준(`21년 시세 9~15억)

- ②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 ③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boxed{\text{`23년 공시가격}} = \boxed{\text{`22년 말 시세}} \times \boxed{\text{`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3.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선
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1주택자) 11억원 • (일반)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1주택자) 12억원 • (일반) 9억원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하) 0.6% ~ 3.0% • (3주택 이상) 1.2% ~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 2.7%
세부담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하게 150%

행정안전부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추진

- 민생안정 예산 적기집행,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예산 집행관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 10월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4%로, 전체 예산 546.9조 원 대비 385.1조 원을 집행 완료하여 계획(전체 예산 대비 85%)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
- 이 중 민생안정 예산(12개 항목)은 특별 점검·관리를 통해 전체 96.4조 원 중 75.0조 원(77.8%)을 집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5.1%p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관련 예산	주요 사업
취약계층 지원 (62.4조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노인일자리 및 맞춤돌봄, 결식아동 급식 등
소상공인 지원 (9.3조원)	운수업계보조금, 이차보전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운수업계 유가보조, 중소기업 창업 융자 등
기타생활 지원 (25.1조원)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예방접종 및 감염병 대응, 도서민여객선 운임, 지역공연예술제 지원 등

- 이와 함께, 금년에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약 5.7조 원) 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사업간 예산 이용·전용(약 1.4조 원)을 실시하였다.
 -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약 0.6조 원)하기도 하였다.

1. 신규사업으로 예산 재편성 (5.7조원)

- ※ (부산) 부진사업(마리나비즈센터 건립비(25억원), 환경체험교육관 조성(8억원) 등) 예산을 삭감하여 신규사업(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에 반영
- ※ (인천) 미추진 사업(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51억원))을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도원 체육관 내진보강, 보건소 인력지원 사업)으로 변경

2. 예산 이·전용 (1.4조원)

- ※ (대구 수성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33억원)를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로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
- ※ (전북) 보조교사 지원사업(193억원)을 보조교사 처우개선 세부사업 간 예산 변경

3. 삭감된 사업예산 등은 지방채 상환에 활용 (0.6조원)

- ※ (대구) 홍보비용, 축제지원 등 절감 예산(600억원)으로 채무 조기상환
- ※ (세종) 별관증축사업 등 미추진 사업 삭감 예산(300억원)으로 채무 상환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단계별 관리,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자치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현(現)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촘촘한 위기ガ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4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 '15.12~'22.7, 위기의심가구 약 458만 명 발굴, 읍면동 조사·상담 후 약 188만 명에 복지 지원
-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ガ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또한, 경제·인구·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정부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9.1~)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과정의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현장 복지 종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2. 추진방향

-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지원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 주요 추진과제는 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이다.

목표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 New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추진 과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 ▶ 자체 인력운용 개선 및 발굴역량 강화
- ▶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 위기구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
- ▶ 복지멤버십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구구 예방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 ▶ 발굴 후 공공·민간지원 연계 강화

New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강화
- ▶ New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 ▶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

3. 추진 과제

1.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먼저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구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 (위기정보 입수 확대)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 2022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구구를 발굴하던 것을 2022년 11월 5종을, 2023년 하반기 5종의 정보를 추가한다.

* ('22년)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18개 기관 34종 위기정보

※ ('22년 11월~) (추가)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3년 下) (추가)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③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④ 수도요금체납 정보, ⑤ 가스요금체납 정보

- (질병) 중증질환 등 질병은 치료·간병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단절로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새로이 추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 대상을 발굴한다.

- (채무) 대내외 경제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구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확대*하고,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 * (기준) 최근 2년간 연체금액(계좌별)이 100만 이상~1,000만원 이하 연체자(1, 2, 3 금융권, 신용카드, 서민대출 포함) → (개선) 1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고용) 고용단절, 실업 등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 (체납) 단수,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하여 함께 활용한다.

- (시스템 고도화) 위기ガ구 발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하여 세대 단위 모형, 생애주기별 모형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2개월→1개월, '23.12)하여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로 위기ガ구를 발굴한다.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단위 모형 ▪ 경제적 취약계층 위주 ▪ 노인층(저소득층) 중심 ▪ 전국단위 동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단위 모형 ▪ 주요변수 모형 ▪ 생애주기별 모형 ▪ 지역특성별 모형

□ 자체 공공 위기ガ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 (지자체) 먼저, 지자체의 위기ガ구 발굴·지원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 (민관협력)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자체 복지공무원 중심의 위기ガ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 (의료사회복지사) 건강이 악화된 위기ガ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 필요 /'22.7월 기준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총 988명 배치(1개소 당 평균 2.7명)
 - (집배원)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ガ구를 1차 상담하여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 (인적안전망) 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ガ구 발굴을 확대·내실화한다.
 - *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에 설치된 민관협력기구로, 이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ガ구 발굴·자원연계 등 역할 수행('21. 6.6만명)s

- (신고체계)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 전국민 알림·신고체계 구축 전이라도,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129), 인터넷 및 모바일 앱(복지로), 방문(행정복지센터)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2.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ガ구 지원

□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신속한 위기ガ구 파악에 집중한다.

- (소재파악) 지자체가 위기의심ガ구 발굴 조사 중 빙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한다.
 -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2022.10.6 ~ 12.30)부터는 연락두절, 빙집 등 복지 위기ガ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한다.
 - * '21.4차~'22.3차 중앙 발굴대상자 중 연락두절, 빙집 등으로 연락하지 못한 17,429명
- (연락처 연계) 행안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여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강제개문) 지자체가 위기ガ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ガ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을 마련 한다.

□ 위기ガ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 (신청지원) 먼저, 전국민 '복지멤버십'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22.9~), 11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안내 중('22.9)
- 직접 온라인 ·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에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7종 급여,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등 32개 의료기관 참여 시범사업('23.1~)

○ (기초생활보장 강화) 또한, 위기가구 발굴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 ('22) 512.1만원→ ('23) 540.1만원 (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급지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23-)를 추진한다.

-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상향 필요성 검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3.8)에 선정기준 상향 로드맵 등 포함 추진

** 현재 3개 지역구분을 4개로 세분화, 기본재산 공제액 ·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 상향

○ (긴급복지 · 자원연계)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 · 군 · 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 뿐만 아니라 복지관, 민간 모금기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한다.

-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토대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초기상담 – 욕구파악 - 사례회의 및 계획수립 – 지원·연계 -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실시
- ** 복지관 등 민간복지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모금기관, 푸드뱅크 · 마켓 등

○ (정신건강 · 자립지원)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 · 의뢰체계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대상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및 극빈곤층 자활근로 우선배치를 추진한다.

□ 3.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 지원

□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위기대응 시스템)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 · 발표(~'22.12)하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한다.

○ (기본계획 · 예방사업)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 ('22.7~'23.12)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24~).

- * 형식적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실질적 1인 가구도 포함

** 9개 시도(39개 시군구) 추진 중('22.8월~)

○ (중대사건분석) 고독사를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요 사건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대사건 보고 ·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자립준비청년) 지난 17일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설문조사, 심층조사, 데이터 연계 행정조사, '22.4~5, '22.8~12) 결과 등을 토대로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병원, 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 2023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돌봄, 가사 · 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고립 · 은둔청년) 현재 공식적인 통계 · 정의 등이 없는 새로운 유형인 고립 · 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규모 ·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23~)

○ (정보제공 · 소통강화)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여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 · 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라며,

○ "향후 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김 성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연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정해지는 법정전출금과 법류에 전출 근거는 있으나 규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뉘어짐
-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통계목상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보조금 즉, 비법정전출금을 의미함

• 법정전출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내역 •

구분	부담금	근거법령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운영비	「도서관법」제29조 제2,3항
	학교 급식비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
	기타 교육지원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
	교육경비보조금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
	교육경비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비법정전출금)의 추이

-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과 비법정전출금의 결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약 12 조원규모에서 2018년 16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약 14조원으로 매년 등락은 있으나 단기간에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법정전출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내역 •

구분	합계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비중	비중
2020	14,156,109	12,622,275	(89.2)	1,533,834
2019	13,928,549	12,256,805	(88.0)	1,671,744
2018	16,261,645	14,989,603	(92.2)	1,272,043
2017	12,921,887	11,821,052	(91.5)	1,100,836
2016	11,914,161	11,037,487	(92.6)	876,674

2. 성과관리의 사각지대의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

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

- 2016년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다음 해의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청이나 지원청, 각급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원 할뿐 목적한 바 및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시의 교육담당자]

"중앙정보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 보조금 등 재원 부담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교육경비 보조금과 혼용 사용시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의 교육담당자]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의 경우 교육청에서 정산하여 보내온 정산서에 대한 숫자적 확인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별 정산 내용을 건별로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여 재원별 사업 추진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면 연차별 사업관리와 사업 추진 과정의 중간 점검 및 정산 확인시 편리할 것입니다."

- ⋆ ⋆ 군에서도 광역지자체에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협력지구사업은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없이 교육청이 단독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조금 지급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사업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음

교육자치에 따른 한 지역 두 기관 자치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된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는 교육자치제도에 따라 한 지역, 같은 주민에 대해 두 개의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각자 행정을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과세권이 없고 지출권만 있다 보니, 세입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함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사업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일반 재정사업이나 보조사업과는 달리 또 한편의 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기관인 교육청에 관련 서류나 결과물 등의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없음
-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도 자체 회계시스템이나 감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전체 공공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는 취약한 부분임
- 이상과 같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는 물론 숫자적 정산외에 구체적 지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공동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과관리가 필요함

03. 교육기관 보조금의 성과관리 방향

- 공공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의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주요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또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임에 따라 반드시 사후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국민과 지방 주민의 세금이 계획한 대로 쓰였는지, 예산을 쓴 효과는 있었는지, 다음 해의 사업에는 어떠한 내용을 환류시킬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221호) 제28조 제4항에서는 교육기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택적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서로 다른 집행기준, 비슷한 목적의 다수 사업 등 교육사업 경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자치를 하고 있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 예산 전출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 사업에 대해 적계는 지방세의 10% 많게는 30%까지 보조토록 하고 있지만, 집행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서로의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비슷한 목적의 다수 사업문제가 있음
 - 이에 학교 등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쪼개진 사업으로 인해 좀더 큰 목적의 효과적인 지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 교육청의 자체사업(교육과정 등 고유의 교육청 사업제외) 등에 대한 사업내용 공유가 요구됨

출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_김진영

정부24가 더! 편리해졌다고요?

필요한 민원·생활·혜택 정보를 한번에!

행정안전부

정부24 원스톱서비스 확대

서민, 장애인, 노후생활 지원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일괄신청할 수 있어요.

신규서비스 4종

- 서민금융지원
- 장애인지원
- 내 차 관리
- 노후생활 지원

확대서비스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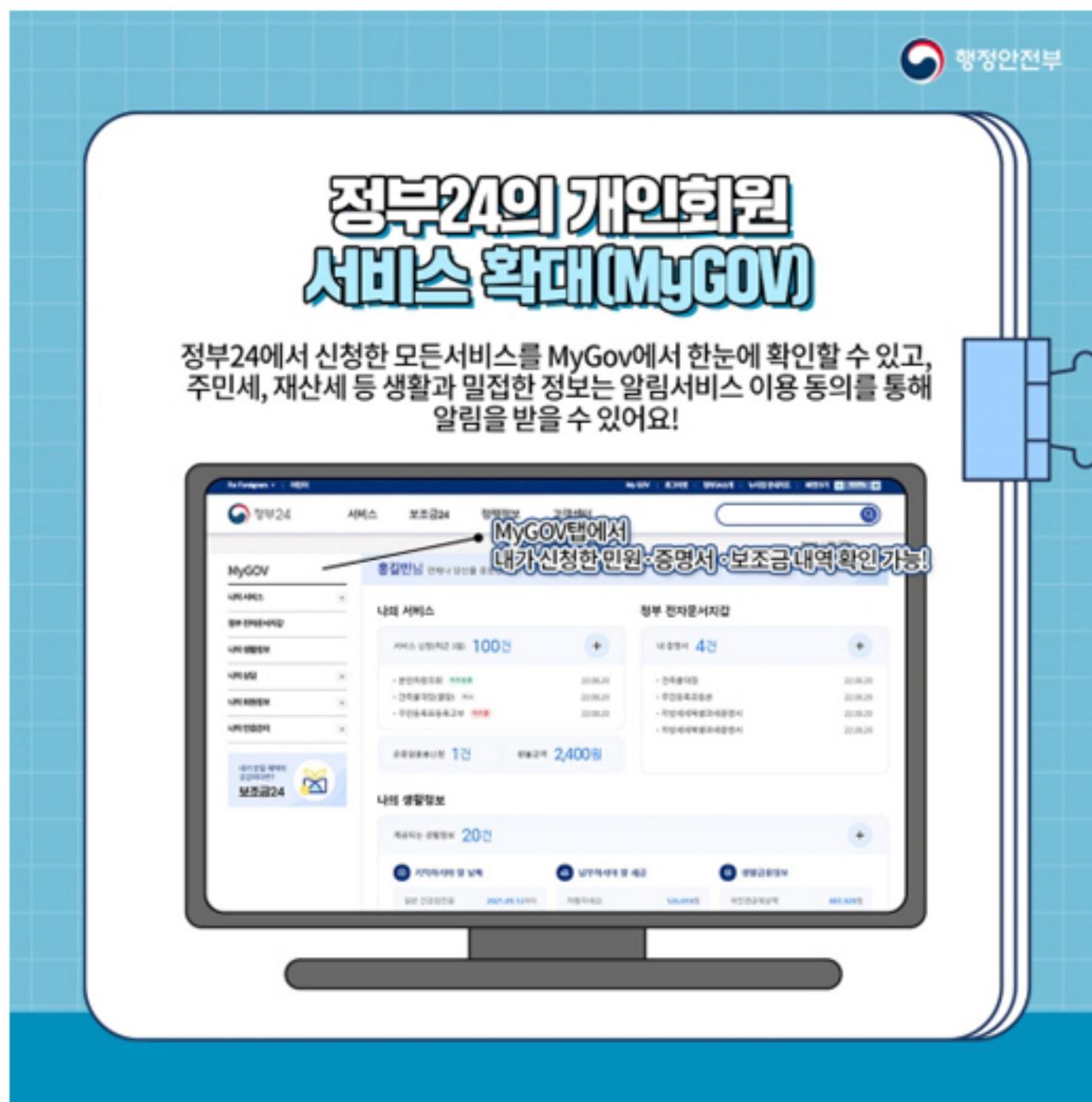
- 행복출산
- 온종일돌봄
- 취업서류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행정안전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행정안전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행정안전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모바일로 더욱 간편해

신청화면과 입력항목을 간소화하여 더욱 편리해요.
세로로 스크롤 내리지 않고 한번에 확인이 가능한 화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행정안전부)